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9
------	------

2017. 8. 31.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7월 25일, 박중화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7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8.3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박중화 의원)

###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로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전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2. 이송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건의안의 개요

- 본 건의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의류 등 일상 생활 용품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관리 체제로 법의 개정을 건의함.

####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2016년 1월에 전부 개정하였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제도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통일하여 일원화하였음.
  - 기존에 공산품의 경우 안전관리제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법		개정법
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전기용품	의류·잡화 등 공산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 高↑ 위해도 ↓ 低	안전인증 (전선 등 39종)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등 11종)	①안전인증 (전선, 가스라이터 등 50종)
	안전확인 (TV 등 63종)	자율안전확인 (자전거 등 32종)	②안전확인 (TV, 자전거 등 95종)
	공급자적합성확인 (스캐너 등 71종)	안전·품질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등 41종)	③공급자적합성확인* (스캐너, 가정용 섬유제품 등 112종)
주요내용	전기용품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 시험하거나 제3자에 의뢰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 제조·수입업자는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 시험하거나 제3자에 의뢰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KC인증 서류 비치의무	○	×	○

\*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인증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서를 통해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

- 따라서 종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표시만 하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들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해당제품을 판매·대여·구매대행·판매대행 등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생겼음.
- 하지만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새로운 규제가 소상공인 등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말까지는 시험결과서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여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유예하였음.

## 다.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품질표시 의무만 있던 많은 공산품들도 획일적으로 안전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었음.
  - 종전에 안전·품질표시 대상인 가죽제품, 가구, 접속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포함) 등의 제품들이 안전·품질검사 대상이 되었음(붙임자료 참조)
  
- 이로 인해 원자재 생산업자가 아닌 판매제품의 생산자인 소상공인이 안전품질검사의 주체가 됨에 따라 단순 공정을 거치는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5일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사 시간과 검사료의 부담으로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소상공인은 주장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의 경우 인증기관에 안전성 기준의 적합여부를 의뢰하여야 하고 의류제품과 같이 원단, 단추 등 부자재별로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이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 해외구매 사이트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라. 종합의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정부 발의로 입법이 되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적용이 일부 유예되었고 국회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준다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제품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제 방안 등의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생생활에 관련된 용품에 대해 과도한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본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939
----------	------

발의연월일 : 2017년 7월 25일

발 의 자 : 박중화, 우형찬, 김태수, 성중기,  
박진형, 김제리, 김인호, 최관술,  
신원철, 서영진, 장우윤, 황준환,  
강감창, 박성숙, 박마루, 신건택,  
이명희, 주찬식, 이숙자, 남재경,  
김진수, 최호정 의원(22명)

## 1. 주 문

-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로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 3. 이 송 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전통시장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로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슴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되었다.

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국가통합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국가통합인증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수준이며, 이를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다.

법제정 취지가 소비자의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은 법 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 시행이라며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7.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